

의안번호	2106136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0.11.0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비용추계서 요약

### 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	통합환경관리인 신규 및 보수교육(2년마다)
교육의 위탁(안 제21조의5 신설)	×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위탁사업비는 교육수수료로 충당 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5년) 간 총 607억 2,700만원(연평균 121억 4,500만원)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11,438	11,772	12,127	12,491	12,865	60,693	12,139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17	—	8	—	8	33	7
합계	11,455	11,772	12,135	12,491	12,874	60,727	12,145
국비	185	190	196	201	208	979	196
지방비	11,270	11,582	11,939	12,289	12,666	59,747	11,949

주: 통합관리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국가 1개, 지방자치단체 61개('20.11.기준)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 차 례

---

---

I. 비용추계 결과 .....	1
II. 재정수반요인 .....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4
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5
3. 통합관리인 교육(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	7
4. 추계 결과 .....	7
[참고자료 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9
[참고자료 2]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허가 현황 .....	1

---

---

## 일러두기

---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14억 5,500만원, 2026년 128억 7,4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607억 2,700만원(연평균 121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11,438	11,772	12,127	12,491	12,865	60,693	12,139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17	—	8	—	8	33	7
합계	11,455	11,772	12,135	12,491	12,874	60,727	12,145
국비	185	190	196	201	208	979	196
지방비	11,270	11,582	11,939	12,289	12,666	59,747	11,949

주: 통합관리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국가 1개, 지방자치단체 61개('20.11.기준)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II. 재정수반요인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21조의2 신설)
  - 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1항)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제3항)

#### □ 보수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제1호)
  -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제2호)
-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제4항)

#### □ 교육의 위탁(안 제21조의5 신설)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 Ⅲ.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는 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4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sup>1)</sup>에 선임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및 교육경비를 추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은 62개소(환경부 운영 1개, 지방자치단체 운영 61개)로 파악(2020년 11월 기준)되며, 통합관리사업장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등은 [참고자료 2]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허가 현황 참고

1)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전체 통합관리사업장 수는 1,341개소로, 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은 주로 폐기물 소각장

- 환경부 자료를 참고하여 1개 사업장에 3명의 통합환경관리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sup>2)</sup>
    - 신규 고용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수에 환경분야 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적용
    - 이때, 별도의 사무공간 및 PC·사무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업장의 유휴 공간 및 기본경비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경비는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중 ‘환경기술인 교육’ 과정을 참고하고, 교육수수료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신규교육(최초 선임시): 전문관리자 과정(4일), 9만원
    - 보수교육(2년마다): 일반관리자 과정(2일), 4만 5천원
- 안 제21조의5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사업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sup>3)</sup>
-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수수료를 징수하여 위탁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 대기 및 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sup>4)</sup>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2) 환경부에 따르면 선임해야할 통합환경관리인 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사업장당 평균 3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3)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 및 수질 분야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협회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환경기술인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명목임금상승률	2.4	2.6	2.8	2.9	3.0	3.0

주: 2026년 전망치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와 교육경비
-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음
  - 통합환경관리인 인건비는 신규 고용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수에 환경분야 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를 곱하고, 월 평균 22일 및 12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보수를 추계
    - 환경분야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199,510원(2020년 기준)<sup>5)</sup>
    - 연도별 보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적용하고, 연도별 기관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sup>6)</sup> 적용
    - 이때, 별도의 사무공간 및 PC·사무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업장의 유희 공간 활용과 기본경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은 신규 고용된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하여 2022년에 신규교육, 2024년 및 2026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환경부 고시)의 ‘환경기술인’ 교육경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신규교육(최초 선임시): 전문관리자 과정(4일), 9만원
    - 보수교육(2년마다): 일반관리자 과정(2일), 4만 5천원

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2019.12.10.  
적용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19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환경분야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원, 1인 1일 기준)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숙련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초급숙련 기술자
370,148	271,754	247,322	199,510	175,373	189,577	174,180	157,690

주: 위 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6)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연도별 요율은 다음과 같다. 11.01%('21), 11.13%('22), 11.26%('23), 11.38%('24~'26)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연간 추가재정소요} &= \text{통합환경관리인 인건비}_t + \text{신규·보수 교육경비}_t \\ &= \text{보수}_t^{1)} + \text{기관부담금}_t^{2)} + \text{신규·보수 교육경비}_t^{3)} \end{aligned}$$

이때,  $t$ 는 2022~2026년

$$1) \text{보수}_t = \text{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통합관리사업장 수}^a) \times \text{신규 고용인원}^b) \times \text{1인당 연간 보수}^c)$$

a) 통합관리사업장 수: 62개(국가 운영 1개, 지자체 운영 61개)

b) 사업장당 신규 고용인원: 3명

c) 1인당 연간 보수: 52,671천원

(2020년 기준 환경분야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1일 199,510원  $\times$  22일  $\times$  12월)

※ 환경부 제출자료 (2019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결과)

※ 이때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2.4%('21), 2.6%('22), 2.8%('23), 2.9%('24), 3.0%('25~'26)

$$2) \text{기관부담금}_t = \text{통합환경관리인 보수} \times \text{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a)$$

※ 이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11.01%('21), 11.13%('22), 11.26%('23), 11.38%('24~'26)

$$3) \text{신규·보수 교육경비}_t = \text{통합환경관리인 전체 수}^a) \times \text{교육수수료 단가}^b)$$

이때,  $t$ 는 2022년, 2024년, 2026년

a) 186명 (= 62개 사업장  $\times$  3명)

b)  $t=2022$ 년일 때 신규교육 9만원(4일 과정), 전문관리자 과정

$t=2024, 2026$ 년일 때 보수교육 4.5만원(2일 과정), 일반관리자 과정

※ 환경부 고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중 환경기술인 교육과정 및 수수료 참고

## 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업, 증기공급업, 폐기물처리업(매립시설 제외) 등 251개 대상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은 62개 시설(환경부 운영 1개, 지방자치단체 운영 61개)로 파악
- 통합허가 대상 전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2 중7) 사업장으로 19개 업종에 전체 1,341개(2020년 11월 기준)

7)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물질 배출규모
1종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sup>3</sup> 이상
2종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1일 폐수배출량 700m <sup>3</sup> 이상, 2,000m <sup>3</sup> 미만
3종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1일 폐수배출량 200m <sup>3</sup> 이상, 700m <sup>3</sup> 미만
4종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1일 폐수배출량 50m <sup>3</sup> 이상, 200m <sup>3</sup> 미만
5종사업장	연간 2톤 미만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발취·정리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등은 [참고자료 2]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허가 현황 참고

□ 본 추계는 환경부 자료를 참고하여 각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 3명이 신규로 선임되는 것으로 가정<sup>8)</sup>

- 연간 보수는 환경분야 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199,510원, 2020년 기준)에 월 평균 22일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계
  - 이때 연도별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sup>9)</sup> 적용

[표 2] 환경분야 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연간 보수 추계: 2020~2026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인당 연간 보수	52,671	53,935	55,337	56,886	58,536	60,292	62,101

자료: 2019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은 연간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 요율<sup>10)</sup>을 곱하여 추계

□ 추계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3인)을 선임하는 경우,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06억 9,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통합환경관리인 인건비 추계: 2022~2026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보수	사업장 수(A, 개)	62	62	62	62	62	—
	통합환경관리인 수(B, 명)	3	3	3	3	3	—
	1인당 보수(C, 백만원)	55	57	59	60	62	—
	소계 (D=A×B×C, 백만원)	10,293	10,581	10,888	11,214	11,551	54,526
기관부담금(E, 백만원)		1,146	1,191	1,239	1,276	1,314	6,167
합계(F=D+E, 백만원)		11,438	11,772	12,127	12,491	12,865	60,69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환경부에 따르면 선임해야할 통합환경관리인 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사업장당 평균 3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9)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4%('21), 2.6%('22), 2.8%('23), 2.9%('24), 3.0%('25~'26)

10)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에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연도별 요율은 다음과 같다. 11.01%('21), 11.13%('22), 11.26%('23), 11.38%('24~'26)

### 3. 통합관리인 교육(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은 신규 고용된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하여 2022년에 신규교육, 2024년 및 2026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환경부 고시)의 ‘환경기술인’ 교육경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신규교육(최초 선임시): 전문관리자 과정(4일), 9만원
    - 보수교육(2년마다): 일반관리자 과정(2일), 4만 5천원
    - 이때 교육수수료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교육비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4] 통합환경관리인 교육경비 추계: 2022~2026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교육대상자(명, A)	186	—	186	—	186	—
신규·보수교육 수수료 단가(만원, B)	9	—	4.5	—	4.5	—
교육경비 (백만원, C=A×B)	17	—	8	—	8	33

주: 1. 신규교육 2022년, 보수교육은 이후 2년마다 실시  
 2. 환경부 고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중 ‘환경기술인’ 교육경비 단가 적용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14억 5,500만원, 2026년 128억 7,4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607억 2,700만원(연평균 121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11,438	11,772	12,127	12,491	12,865	60,693	12,139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안 제21조의4 신설)	17	—	8	—	8	33	7
합계	11,455	11,772	12,135	12,491	12,874	60,727	12,145
국비	185	190	196	201	208	979	196
지방비	11,270	11,582	11,939	12,289	12,666	59,747	11,949

주: 통합관리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국가 1개, 지방자치단체 61개('20.11.기준)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sup>11)</sup>

□ 관련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법 제6조)
  - \*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7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 최대 73종의 인허가 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인허가 기관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확보
  - (기존)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 → (변경) 환경부
-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00여개소) 대상 단계적 적용('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 사업장은 4년 유예 적용)
  -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1,400여개) 외 사업장(약 8만여개)은 현행 개별법 적용, 사업장수는 1.6%에 불과,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70% 차지

	[ '17 ]	[ '18 ]	[ '19 ]	[ '20 ]	[ '21 ]
	➡	➡	➡	➡	
업종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석유화학계)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283개 사업장)	(310개 사업장)	(152개 사업장)	(142개 사업장)	(518개 사업장)

- 최적의 환경관리를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하고,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기술검토 수행

□ 기대효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배출시설 인·허가에 대한 사업장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오염 매체별 배출영향 분석 등으로 환경관리 선진화에 기여

<sup>11)</sup>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에서 발췌·정리(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통합환경관리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붙임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2020. 4. 17.)

## [참고자료 2]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허가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1,341개소('20.11 기준)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 ('17~)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251개\*
    - \* 1차년도 251개소 중 62개소는 국가(1개) 및 지자체(61개) 운영 시설로 파악  
다만, 폐기물매립장 운영 등에 따른 대상 제외 여부 판단 진행 중
  - ('18~) 철강, 비철, 합성고무, 기초화학(유기) 277개
  - ('19~) 석유정제, 화학제품, 비료·질소화합물, 기초화학(무기) 153개
  - ('20~) 펄프·종이, 기타종이, 전자부품 142개
  - ('21~) 섬유염색, 도축육류, 알코올음료,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반도체 518개
- 총 237개소 검토 완료('20.11 기준)
  - 허가완료 204개소, 사전협의 완료 21개소, 반려 12개소

구분	1차 적용 ( '17~'20)		2차 적용 ( '18~'21)		3차 적용 ( '19~'22)		기타	합 계
	발전·증기	소각	철강 비철	합성고무 플라스틱	석유 정제	무기· 유기화학	반도체 ( '21~)	
허가완료	114	79	3	2	1	5	—	204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유미
추계세제분석관보	이주호
연 락 처	02-6788-3735
	<a href="mailto:progress@nabo.go.kr">progress@nabo.go.kr</a>

---